

의안번호	제 56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0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564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근거 마련
- 양성평등 실현,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탄력적이고, 안정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

## 2. 주요내용

-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7조)
  -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하여 위촉해야 하는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대한 인정 심의
-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38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
제38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5.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3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/p>	<p>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3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11조의 2(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“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0.5.19.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0.5.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제42조(기금의 설치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